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8. 27.(목) 10:00

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11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8. 19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8. 19.

2. 제안이유

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, 양성평등위원회 기능, 구성, 위원 임기, 회의 운영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양성평등위원회 구성, 기능, 위원 임기,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(안 제6조제2항제3호, 제7조제3항 및 제4항, 제8조, 제12조제1항)
- 나.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2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 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 - 2) 입법예고: 2020. 7. 24 . ~ 2020. 8. 13 .(20일 이상)
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별도 시행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별도 시행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 시행(여성가족과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7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의 조문 내용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수정하였으며
- 안 제8조 및 제12조제1항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
- 안 제2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한 연장은 타당하다 보며
- 그 밖에 조문들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됨.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정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양성평등기본법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5. 19.>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관리직 목표제“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.>

1. 직종·직급·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

2.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

3.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

4.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

5.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

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